2022학년도 1학기 학부생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

아래 장학금을 신청할 경우 이번학기 국가장학금을 무조건 신청하십시오
(맞춤형장학금, 선한인재장학금, 해외수학장학금, 긴급구호장학금, 경영대 자체장학금 등)
(등록휴학후 복학·다른 장학금을 받는 등 **국가장학금이 필요 없더라도 신청하십시오**)
이번학기 국가장학금 학자금지원구간이 없는 경우 **선한인재장학금 등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며, 다음학기 해외수학장학금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**

1. 신청대상

1) 2022학년도 1학기 등록 대상자 중 교내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생
2) 법정장학금 대상자(국가유공자·북한이탈주민)
3) 유학생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생(글로벌인재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 국적자)
※ 법정장학금 대상자·유학생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자료 참조

2. 신청기간 : 2021. 11. 29.(월) - 2021. 12. 17.(금)

3. 신청방법 : 마이스누 학사정보 → 장학 → 신청/현황 → 장학신청 목록에서 신청

1) **경영대학은 추가 서류제출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공지사항의 제출서류 확인 必**

4.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

1) [장학금 신청사유] 란은 **의무 기재사항이 아니므로**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작성
2) 본인명의 은행계좌 정보 입력 (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)

5. 선정여부 : 소속대학(학과)에서 결정

6. 선정결과 : 2022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되어 확인 가능

1)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되지 않으며 등록금 고지서 확인 또는 마이스누 → 장학내역에서 확인

7. 참고사항

1) 장학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
2)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3) 장학생이 해당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됨
4)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(단, 근로장학금·학업장려비 등은 예외)
추후 다른 장학금에 중복 선발되는 경우 교내장학금 지급액이 감액 조정될 수 있음
5) 규정학기초과자가 지정된 기간내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(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장학금 산출도 불가함)

8. 문의 : 경영대학 교학행정실 장학담당자 박주현(02-880-6908, jd4ever@snu.ac.kr)

[첨부] 교내장학금(법정장학금·유학생장학금) 추가안내

1. 법정장학금(국가유공자·북한이탈주민) 선발자격 및 제출서류

선발자격		제출서류
법정장학금	국가유공자	장학선정신청서 (기타사항의 "국가독립유공대상자" 항목 체크) ※ 최초 신청자 : [대학수업료등면제자 증명서] 제출 (관할 보훈지청 발급)
	북한이탈주민	장학선정신청서 (기타사항의 "북한이탈주민대상자" 항목 체크) ※ 최초 신청자 : [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], [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] 제출 (시·군·구청 또는 주민센터 발급)

2. 유학생 장학금 선발자격 및 제출서류

선발자격		제출서류
유학생	소득기준 (2021 연간소득 5,000만원 이하)	2021년도 연간 소득이 5,000만원 이하인 외국국적 학생(글로벌인재특별전형) 장학선정신청서, 가족관계 증명서류, 소득증빙 서류 제출 ※ 세부사항은 표 아래 설명 참조
	UN 참전용사 손자녀	장학선정신청서 작성 ([장학금 신청사유] 란에 해당사실 기재) 가족관계증명서, 병적증명서 원본 제출 (최초 1회)

□ 소득기준 유학생장학금 제출서류**(12월 27일(월)까지 경영대 교학행정실로 제출)**

1) 기본서류 : 장학선정신청서(마이스누에서 작성) 및 해당 국가의 가족관계 증명서류 원본

2) 소득증빙 서류

- 2021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 원본 (미혼 신청자 : 본인 및 부모 / 기혼 신청자 : 본인 및 배우자)
  2021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, 2020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 제출
-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
- 세금신고·소득증빙 제도가 없는 국가의 근로소득자 : 겸직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

3) 모든 서류는 **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**이어야 하며, 영어 ·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발급된 문서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한 후 공증을 받아야 함

□ 연간 소득액은 KEB하나은행 고시 환율로 환산 산출함 **(선정시점 기준 최근 1년간 최저 환율)**

장학금 중복수혜 금지 관련 안내

1. 모든 등록금성 장학금액과 학자금대출액은 당해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2. 등록금을 초과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중복수혜(이중수혜)로 분류되며, 초과 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액은 반납·상환해야 합니다.

3. 반납·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가장학금·학자금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4. 단, 1개 학기에 여러 종류의 장학금을 수혜받더라도 그 총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복수혜(이중수혜)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중복수혜에 해당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종류

학자금대출	장학금
ㅇ 취업후상환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ㅇ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무이자 융자 ㅇ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 융자 ㅇ 노동부(한국산업인력공단) 및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대상 학자금 대출 ㅇ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학자금대출 ㅇ 국방부 군인자녀학자금대출 등	ㅇ 국가장학금 - 대통령과학장학생 장학금 - 국가장학생(이공계) 장학금 - 인문100년 장학금 - 국가장학생(예체능계) 장학금 - 국가장학금 유형 Ⅰ, Ⅱ ㅇ 교내장학금 ㅇ 발전기금·장학단체 등 교외장학금